85. 4세대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전환 인센티브 할인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)

①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(이하 "전환전계약"이라 합니다.)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(계약전환용)(이하 "전환후계약"이라 합니다.)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
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"전환후계약"의 보험기간동안 4세대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전환 인센티브 할인을 적용하며,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2조(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"전환후계약"의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할인율은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릅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